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동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○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 : 6급 2명, 7급 2명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□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참고 자료 (근거 법령 내용) 1부. 끝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본청 “941” 을 “945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